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세 입

(1) 세입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일반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57%인 14억 9,857만 2천원이 증가된 597억 598만 4천원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59,705,984	58,207,412	1,498,572	2.57

(2) 세입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 지방세수입에서 13억 5,200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 증액
- 보조금에서 4,65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 출

(1) 세출규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일반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72%인 2억 9,878만 8천원이 증가된 416억 7,778만원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41,677,780	41,378,992	298,788	0.72

(2) 세출내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 소관 부서별 내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기획감사실	15,110,044	15,160,954	△50,910	△0.34
정보홍보담당관	1,132,389	1,030,489	101,900	9.89
총무과	5,877,404	5,859,579	17,825	0.30
주민자치과	1,114,693	4,856,958	△3,742,265	△77.05
지방세과	409,000	413,479	△4,479	△1.08
경영회계과	1,705,197	1,689,217	15,980	0.95
민원봉사과	172,969	172,369	600	0.35
보건소	3,902,763	3,885,456	17,307	0.45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5,121,754	1,208,624	3,913,130	323.77
동예산	7,131,567	7,101,867	29,700	0.42
합 계	41,677,780	41,378,992	298,788	0.72

나.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배정액	지출원인행위	이월액	이월사유
총 사 업 건 수(11건)	4,838,180	2,668,574	2,162,039	4,212,748	
자체사업(6건)	693,180			689,480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00,000			100,000	소요사업비 결산추경 확보
금호동 금부마을회관 건립	170,000			170,000	사업계획변경
자동차 대체구입	24,700			21,000	물자절약을 위한 차량구입 시기 조정
사무용품 비품교체	9,980			9,980	소요사업비 결산추경 확보
유덕동사무소 건립	382,500			382,500	동절기 이후 사업 추진
청사전면도색	6,000			6,000	소요사업비 결산추경 확보
보조사업(5건)	4,145,000	2,668,574	2,162,039	3,523,268	
시책추진 물품구입비	25,000			25,000	소요사업비 결산추경 확보
화담사 동재 복원	180,000	5,810	5,810	174,190	소요예산 확보 지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0			40,000	소요사업비 결산추경 확보
국민체육센터 건립	3,000,000	2,662,764	2,156,229	2,384,078	준공기한 미도래
생활체육공원 조성	900,000			900,000	시도시공원 위원회 심의지연

다. 계속비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210	1,210		1,210
서창향토문화마을 3단계 조성사업	향토문화 가상입체영상 체험관 구축 등 4건	1,210	1,210		1,210
시 설 비		1,203	1,203		1,203
시설부대비		7	7		7

II. 검토의견

서구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증가분,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집행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57%인 14억 9,857만 2천원이 증가된 597억 5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72%인 2억 9,878만 8천원이 증가된 416억 7,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세 입	59,705,984	58,207,412	1,498,572	2.57
세 출	41,677,780	41,378,992	298,788	0.72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속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1·2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향토문화 가상입체 영상체험관 구축·주변환경정비, 백마산 산책로 개설, 향토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내용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12억 1천만원은 2002년 말에 확보되어 2003년도로 명시이월한 8억 5천만원(국비 : 5억원, 시비 : 3억 5천만원)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2억 5천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지매입비 1억 1천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구청에서는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추경안에서는 서창향토문화마을 3단계 조성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표-1> 계속비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210	1,210		1,210
서창향토문화마을 3단계 조성사업	향토문화 가상입체영상 체험관 구축 등 4건	1,210	1,210		1,210
시 설 비		1,203	1,203		1,203
시설부대비		7	7		7

계속비제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예산운용 방법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사업의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수 년도에 걸쳐 계속 지출할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회계년도)와 지방재정법 제3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재정법 제4조(출납폐쇄기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은 다른 회계년도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써 계속비제도와 지방재정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상충용제도 그리고 이월비 및 채무부담행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계속비라 함은 2개의 회계년도 이상에 걸치는 계속사업의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그 완성까지 수년도의 기간을 요하는 공사, 제조 기타 사업의 경우로서 이를 단년도 예산으로 실시하기에는 소요경비를 한해 동안에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나, 또는 사업 완공 소요기간으로 보아 도저히 1년 동안에 완성하기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기본운영계획이나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도 줄이면서 사업의 성과도 동시에 거양하려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계속비제도의 취지나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계속비로 전환되어 편성된 서창향토문화마을 3단계 조성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총사업 기간과 연부액에 대한 구분이 없어 언제 사업이 완공될 것인지, 매년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미 단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수정 전환하는 것은 계속비제도의 취지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에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는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신규 또는 추가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추가계상된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3억 4,055만 2천원, 보조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나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는 보조금교부결정이 지연되었거나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또는 추가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성 질 별	제2회 추경안
자체사업	소 계	340,552
	시 설 비	226,100
	시설부대비	900
	자산및물품취득비	113,552
보조사업	소 계	70,000
	민간경상보조	5,000
	시 설 비	4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합 계		410,552

그러나 자체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안이 확정될 시기와 사업예산의 집행시기를 감안해보면 각종 시설 투자와 장비구입은 설계·계약 등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내에 추경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적인 집행시기는 2003년도를 넘어서야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사업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상된 자체사업 중 사무용품 비품교체비(998만원, 경영회계과)와 청사 전면도색비(6백만원, 경영회계과) 등을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의 보정제도의 하나로써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 사업은 예산확정 시에서 본다면 그 성격상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예산편성 시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추경편성사유나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 사유에서 또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정세변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 두 가지 사업비와 같이 예산 편성 시에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사례는 앞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